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0월 15일, 전수일 의원 발의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9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6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0년 10월 19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전수일 의원)

#### 가. 제안이유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안 목적 및 정의 (안 제1~2조)
-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매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6조)
- 지원대상자 유형 및 세부 지원 내용(안 제7~8조)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용섭)

○ 본 조례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강화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

(“평창군에 거소지 또는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지원대상자 유형과 세부지원내용

안 제9조에서는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며

해당 조례안의 내용은 노인복지법(제4조, 제27조의2), 사회보장기본법(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제정에 있어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과 지원대책은 홀로사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겪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더욱 의미가 크다 보며 조례 제정과 함께 향후 실질적 사업 발굴 및 추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0년 10월 현재, 전국 지자체의 조례제정은 180여 곳으로 제정율 70%이며, 강원도18개 시·군 중 7곳 군데(속초,양양,영월,원주,태백,화천,횡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거소지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사무소, 이·반장,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CT(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일자리 알선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